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현황과 기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



CONTENTS



- I.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성과**
- II.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개념 및 배경**
- III.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흐름**
- IV. 정부 지원방향**
- V. 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
- VI.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절차**
- VII.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화**
- VIII. 의료인력 해외진출 국외 사례**
- IX. 향후 극복과제와 전망**



I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성과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환자유치(In-bound)

세계 의료관광 산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
(15년) 517억 달러 → (22년) 1,438억 달러
(출처: Allied Market Research, 2017)

의료시스템 해외진출(Out-bound)

18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71억 달러
(약 7조 8천억 원)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전년동기대비 30.9% 증가, 무역흑자폭 7억 달러 증가
-(분야별) 의약품 22억 달러(30.0% ↑), 의료기기 17억
달러(13.3% ↑), 화장품 32억 달러(40.6%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0.18)

일본의 정부주도형 진출전략

내각관방장관 주도
국제의료사업 전개
해외의료업 의료법인
부대업무 허용

영국의 합동정부기관 설립

'Healthcare UK' 범정부 협력기
구를 활용한 보건산업 전반지원
(임상서비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헬스케어 시스템개발 등)
영국 NHS, 국제 무역부(DIT), 보건사회복지부
(DHSC)와 공동운영

중국 정부주도 의료시장 개방

~2020년, 건강서비스산업규모
1,400조원으로 확대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개방정책 확대



해외환자유치 (In-bound)



해외환자 유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해외환자 유치 성과

▪ 17년 외국인환자 수 321,574명 [전년대비 11.7% 감소*, 연평균 증가율 23.3 %]

* 2009년 의료법(제 27조) 개정 이후,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정부주도로 진행함에 따라 환자수 지속적으로 증가

* 단, 외부적요인 정치(THAAD), 경제(러시아 금융위기 등) 문제 등으로 17년 외국인 환자 수는 일시적 감소

▪ 국가별/진료과별 환자 수 : 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상위 20개 국가 250,160명으로 전체 82.9% 차지

- 중국(△21.8%), 우즈베키스탄(△20.7%), 카자흐스탄(△16.3%) 순으로 감소
단, 태국(56.0%), 일본(2.2%) 순으로 증가

- 한방통합(12.9%), 신경외과(4.4%), 성형외과(2.0%) 분야 증가 추세
일반외과(△17.3%), 산부인과(△12.7%), 피부과(△8.5%) 순으로 감소

경제적 파급효과

▪ 외국인환자 유치는 진료수입 증가뿐 아니라, 관광·쇼핑 등 다른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

▪ 16년 외국인환자 36만 명 유치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 2조 1천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2천명으로 추산
[출처: 산업연구원, 2017.10]

- 부가가치유발액(1원당):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0.8원>승용차 0.7원>이동전화기 0.5원

- 취업유발인원(10억원당):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0명>승용차 8명>이동전화기 5명

<5년간('13년~'17년) 외국인 환자수*1)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수(명)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1인당 평균 진료비(만원)	186	209	225	236	199
총 진료비(만원)	3,934	5,569	6,694	8,606	6,399

* 1) 실환자 : 의료기관을 방문한 1명의 환자 수 (복수 진료과 방문 미포함)



II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개념 및 배경



의료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약칭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2018.10.19] [법률 제15777호, 2018.9.18. 일부 개정]

제1장 제2조정의

1. **의료 해외진출** 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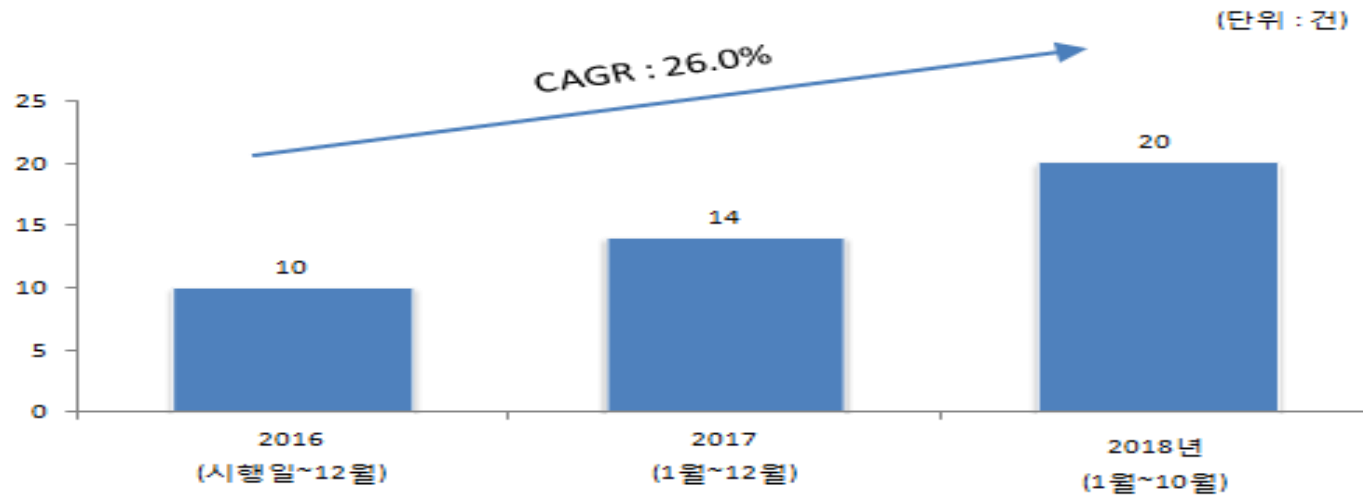




한국의료 해외진출 현황

◇ '16.6.23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16개국 44건 의료기관 해외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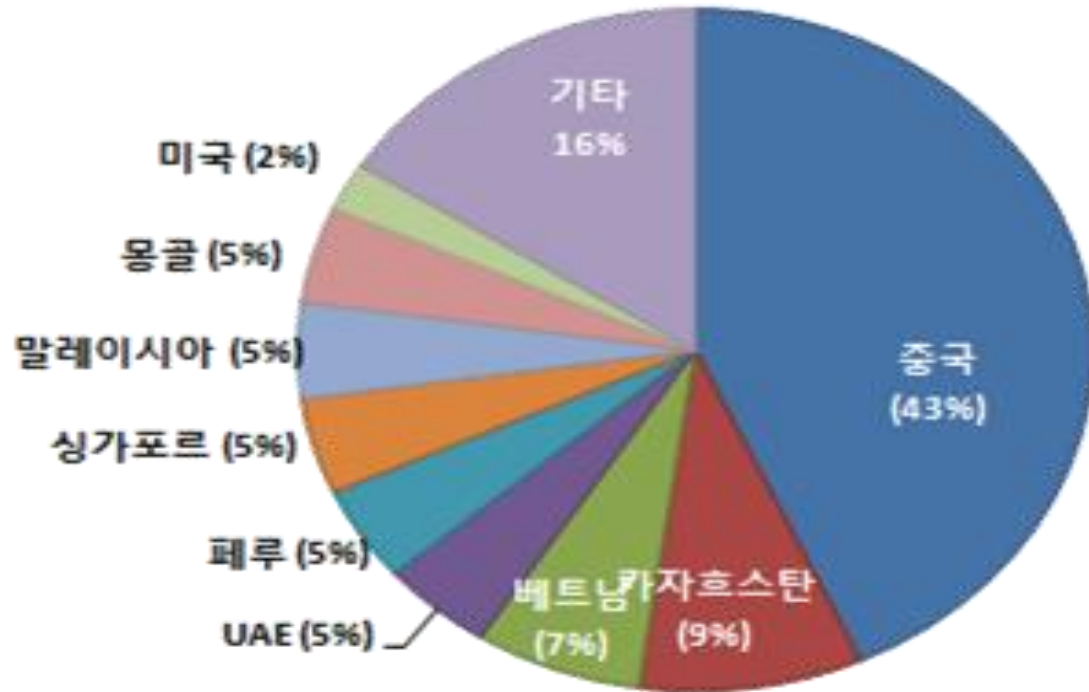
구분	'16.6.21~12월	'17.1월~12월	'18.1월~10월	전체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등록(건)	10	14	20	44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프로젝트(건)	3	5	12	20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외진출 신고(%)	30%	35.7%	60%	45.5%





국가별 신고등록 현황

국가별 진출현황



◇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를 통해 진출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카자흐스탄, 베트남, UAE, 페루,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진출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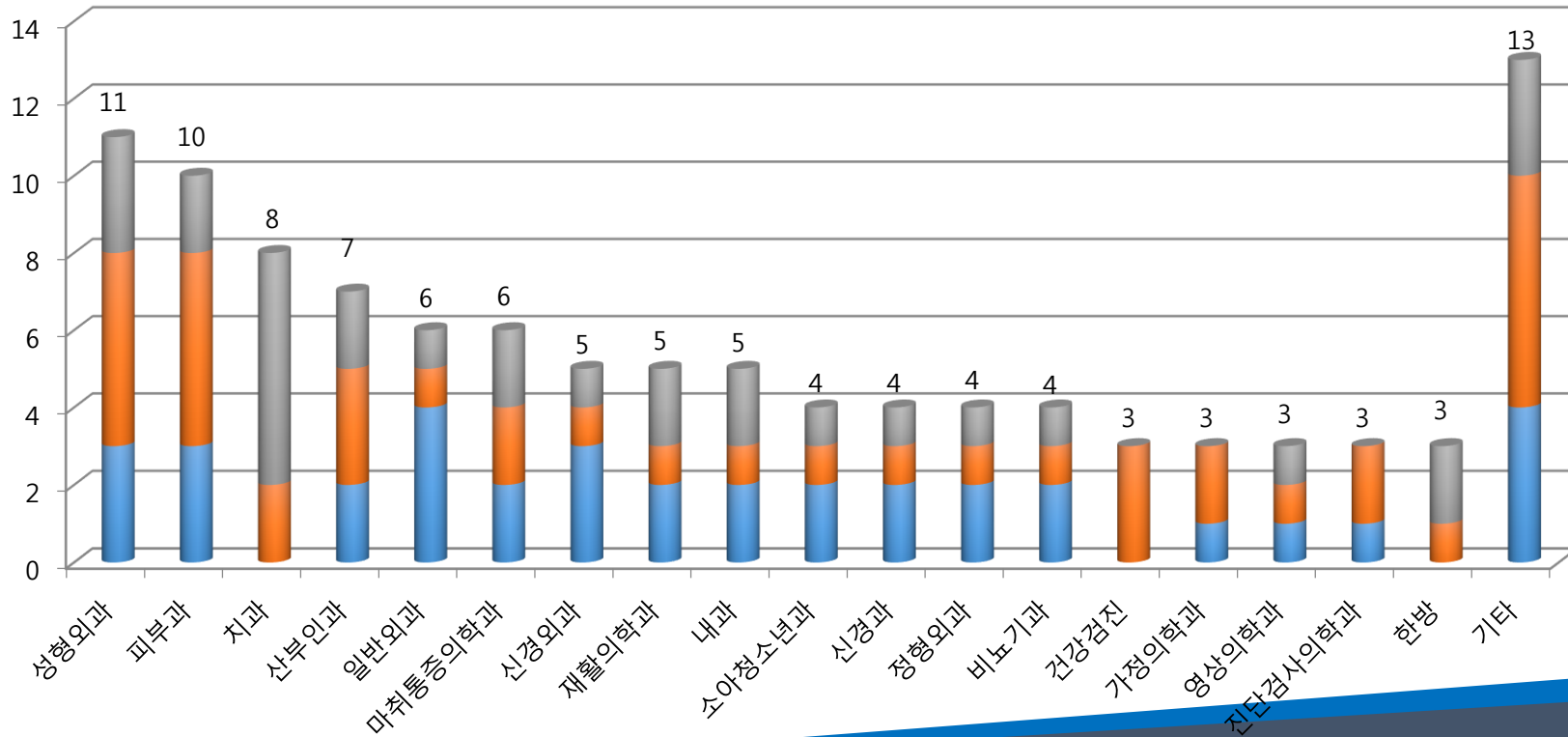


한국 의료 해외진출의 현황



진출과별 신고등록 현황

진출과별 진출현황



◇ 진출 진료과목별 신고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과 10건, 치과 8건 순으로 나타남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의료시장의 포화상태

<국내 의료시장의 상황>

- ✓ 의료기관 수 증가에 따른 경쟁 격화
- ✓ 인력채용과 유지의 어려움
- ✓ 수익성 악화
- ✓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비급여 통제 강화

<해외진출의 관심요인>

- ✓ 해외환자 유입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
- ✓ 환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지 거점병원 마련의 필요성
- ✓ 브랜드 확장
- ✓ 현지에서의 파트너십 제안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고속성장과 의료선진국의 신흥시장 선점 노력

✓ 매년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 점차 급성장해가는 글로벌 헬스케어시장에 대한 기대감
- 축적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입에 대한 자신감

✓ 글로벌의료시장의 Emerging Market : CIS, 중동, 동남아(ASEAN)지역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고급의료수요 확대 및 국가차원의 의료현대화 사업 투자

✓ 의료 국제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일본과의 의료시장 격돌 예상

- 2011년 “의료 국제화사업” 예산으로 46.5억 원 투입 준비
- 2013년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공략
- 최근 ASEAN 시장 공략을 위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ODA를 활용한 신흥국 병원 건설 지원
(현지 의료인에게 일본 의료시스템과 장비 경험의 기회를 제공, 향후 수출까지 연계하는 “현지병원 운영 +의료보험 연계” 전략 추진)
- 신흥국 중심으로 2020년까지 거점병원 10곳을 개설, 2030년 5억엔 시장획득 목표

✓ 미국,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의료선진국의 시장 선점

-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출전략을 마련하여 신흥시장의 대규모 공공병원 설립운영 프로젝트 발주



한국 의료 해외진출의 배경 (국외)



신용국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

오스트리아·캐나다·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민간주도, 민관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 추진 중

• 주요국가 병원 해외진출 현황

오스트리아



VAMED

56개국 850 개 이상 프로젝트,
25개 PPP 모델 사업 수행(18)
전체 약 21조원(16,503 millions euro)매출 (18)

- 850건 이상의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 수행
- 의료컨설팅, 병원기획-설계-시공, 인력훈련 및 운영, IT 솔루션, QI 개발, 시설관리, 국제인증컨설팅, 장비공급 및 구매업무

캐나다



Interhealth Canada

중동, 영국 등 PPP 수주·위탁운영

- 글로벌 헬스케어 운영 그룹
- 쿠웨이트, UAE 등 10개 병원 진출
- 타당성 조사, 마스터 플래닝, 설립지원 및 위탁운영 등 서비스 제공

싱가포르·말레이시아



IHH Healthcare Berhad(IHH) - Parkway Pantai

IHH는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병원경영지원회사로 국부펀드 투자로 3개국 병원그룹 통합 - 말레이시아 (판타이), 싱가포르(파크웨이), 터키(아지바DEM)

- IHH 는 아시아 최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이자 Parkway의 대주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인도 등 11개 국 84개 병원 12,000병상 운영(18)
- 2018 순이익 약 1,088억 원 (RM309.0 million; USD\$ 970 million)
- Parkway Pantai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중국, 홍콩, 브루나이, 미얀마, UAE 전역에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

*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법인, 의료인 등 여러 투자자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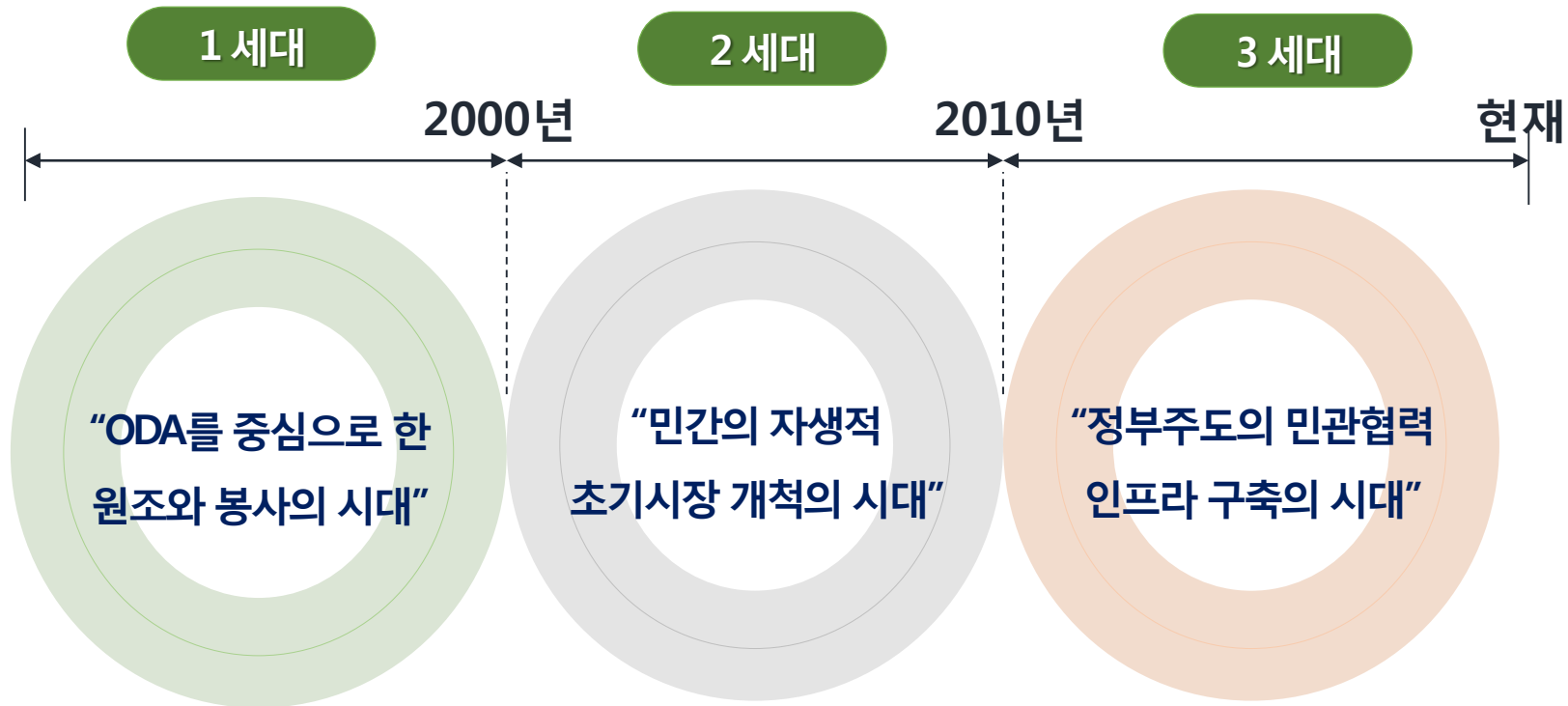
III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흐름



한국 의료 해외진출의 역사



주된 역할을 맡은 주체를 중심으로 3가지의 흐름으로 구분





1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1세대 : ODA를 중심으로 한 원조와 봉사의 시기

1세대 (2000년 이전)

ODA 사업 참여 의료진 중심의
의료봉사와 자선 목적

개인 또는 기관차원의 종교적 신념과 사명을
바탕으로 한 선교 목적의 진출

- 연세의료원의 몽골 울란바타르 연세친선병원(1989)
- 계명대학교동산 의료원의 방글라데시 꼬람뿔라 종합진료소(1992)
- 네팔 카트만두 피부과(1998)
- 카자흐스탄 알마티 알마티-동산의료원(1995)
-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MCM, 2004)

한국의료의 봉사와 나눔의 경험, 해외진료를 통한 한국의료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글로벌 신뢰와 믿음 구축 및 해외진료 경험 축적



1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1세대 : ODA를 중심으로 한 원조와 봉사의 시기

1945년~1999년 : 국제원조 수원국

- 1945년 해방 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957년을 정점으로 무상원조 1959년 말부터 서서히 유상원조로 대체
-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약 127억 달러 원조
- 1995년 세계은행 차관졸업국으로 수원대상국에서 탈피

1960년~1980 : 국제 원조 공여국

- 1960년대 중반부터 전문가파견을 중심으로 원조공여
- 1970년 말부터 본격적인 타국에 대한 개발원조 시작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 유상원조 시작
- 2009년 DAC(OECD 개발원조 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공여국으로 위상 정립

한국의 ODA 공여규모

- 우리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총 2,320백만 달러의 ODA를 제공함 (출처: KOICA, 2018. 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 * 양자원조 1,622 백만 달러(69.9%),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698백만 달러(30.1%)

보건의료분야 ODA 공여규모

- 2012년~2016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828 백만 달러, 11.5%)은 물·에너지·교통(2,334, 32.5%), 기타(1,225, 17.1%), 교육(1,117, 15.6%) 다음 순으로 높음(OECD Status, 2018.7)



1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1세대 : ODA를 중심으로 한 원조와 봉사의 시기

< ODA >

KOICA 중심의 무상원조사업

90년대 초부터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친선 병원, 보건소 등 시설건립사업과 의료인력 파견, 의료기자재 지원, 인력 교육사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



최근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종합병원 건립 사업(베트남 광남성 종합병원 등)도 추진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규모 종합병원,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 병원, 몽골 국립중앙의료원 등)도 추진



90년대 말부터 의료기기구매, 시설 현대화사업부터 시작

EDCF 중심의 무상원조사업



2세대 :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초기개척 시기

2세대 (2000년 ~2009년)

미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의원, 안과, 치과, 산부인과, 척추, 대장항문 등 전문 진료과를 가진 중소규모의 의원·병원중심의 자생적 진출

< 성공 사례 >

- 미국 진출, 함소아한의원(2003)
- 중국 진출, 오라클피부성형외과(2007)
- 중국상하이 진출, 우리들병원(2008)

< 철수 사례 >

- 중국 진출, SK 아이캉 병원(2004)
- 중국 진출, 예메디컬(2005)
- 베트남 진출, 성모안과병원(2004)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한 시기로, 성공과 실패의 음영 구분



2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사례 1. 함소아 한의원

- 한국 최초 소아전문 한의원으로 56개 분원을 운영 중
- 2003년 미국 LA에 1호 한의원을 개원
- 2004년 한의원 네트워크 미국법인(Hamsoausa Inc) 개원
- 미국에 추가로 3개의 한의원(뉴욕, 뉴저지, LA) 및 3개의 센터, 1개의 디스크전문 한방병원 진출
- 이후, 2006년 중국 상해 개원

- ✓ 미국 진출 결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개업 한의사의 평균수익 및 한국 한의원 평균 매출액을 상회
- ✓ 한인을 대상으로한 한의원으로서는 충분한 성과 창출
- ✓ 현지인 대상의 전략수립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 및 분석
- ✓ 향후 보다 성공적인 안착 및 확장을 위한 미국 현지 주류사회 공략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도 중





2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사례 2. 오라클 피부성형외과

- 2007년부터 국내 피부과 공급자가 많아지면서 피부과 경쟁심화로 중국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해외진출 추진
- 중국진출은 오라클차이나(주)를 설립, 중국현지인과 합작방식으로 2010년 11월 중국 대련에 첫 지점 개원 이후 중국 내 16개 지점으로 확대
- 국내 프랜차이즈 경영을 바탕으로 국내외 70개 병원 네트워크 구축하였으며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에 진출성공

- ✓ 프랜차이즈형태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 ✓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Risk가 적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진출 매뉴얼이 갖춰진 것이 장점
- ✓ 병의원 관련 원스탑 토탈 솔루션 제공, 전산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시스템을 활용한 인력관리를 통해 글로벌 확장 추진 중





2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사례 3. 우리들 병원

- 척추전문병원의 과도한 국내경쟁을 벗어나 외국인 환자증가에 따른 현지거점 병원의 필요성으로 해외진출 시도
-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부다비)에 병원 진출
- UAE 우리들 척추센터는 현지 무바달라社의 100% 출자를 통한 위탁경영형태로 2011년 12월 개원(50병상)

- ✓ 우리들병원의 경우는 2007년 한국정부(산업자원부)의 소개를 통해 최초로 UAE 측과 접촉하여 사업 개시
- ✓ 최소침습수술 등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뛰어난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가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아랍문화에 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진출성공의 주 요인으로 평가





2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사례 4. SK 아이캉 병원

- 중국 북경에 중외 합작(7:3) 비율로 중국위생부 국제교류센터와 한국측 SK China 외 5개 국내전문병원이 공동투자하여 설립
- 1,300평 4층 건물 규모에 10개 진료과(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소아과 등), 30여명의 의료진, 100여명의 직원으로 시작
- 초기에는 운영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중국 정부의 세금 등 관련제도 및 정책의 불명확성과 까다로움, 국내 파트너간 경영권 대립, 현지화 실패, 민간상업보험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부유층환자 확보의 어려움, 높은 유지비용(토지, 임대료, 인건비), 중국정부의 외국계병원에 대한 집중단속 강화 등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진료과목을 축소, 한국 의료진이 철수





2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사례 5. 예메디컬

- 예메디컬은 2002년 중국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중국의료시장 및 영리병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5년 해외투자전문회사인 “예메디컬 인베스트먼트홀딩스”를 설립, 진출
 - 중국 내 합자병원의 법적난제를 해결하고자 중국법인의 위탁경영방식 적용
- ✓ 기존의 진출사례가 없었던 만큼 현지 정보력 부재가 가장 큰 어려움
 - ✓ 상대적으로 철저한 영리개념의 기업형 병원이 주가 되는 중국의 환경에 노출된 한국 의료기관의 취약점 (적은 기초자산과 미숙한 방식의 투자자 모집)
 - ✓ 전문 경영인의 부재, 현지 마케팅에 대한 이해부족(교민대상의 마케팅), 자금력 부족 등의 어려움
 - ✓ 지분을 양도하고 철수 하였으며, 현재 중국병원에 인수된 후 현지환자 점유율 증가로 병원 확장 추세





사례 6. 성모안과병원

- 설립이전 8년의 의료봉사 및 4년의 시장분석과 준비 후 2004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지상 4층, 20병상 규모로 설립
- 100% 한국자본투자에 의해 베트남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
- 초기에는 의료진 20여명, 현지인 50여명의 규모로 시작

- ✓ 한국의사들의 충원이 어려워 수준 낮은 베트남 의사 고용운영으로 전환
- ✓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로 인한 경쟁력 약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 ✓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높은 임대료 수준, 외국계 병원들과의 경쟁력 부족으로 2009년 철수





3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3세대 (2010년~현재)

3세대 : 정부주도의 민관협력 인프라 구축의 시대

배경	병원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ODA를 통한 대형 병원건립 프로젝트 (의료기기를 포함한 병원건설과 현지 의료인 초청교육 및 개원 컨설팅 포함) • UAE 원전 수주와 함께 "병원 플랜트"개념으로 관심 고조 • 민간 진출 선발주자들의 성공사례 전파
	병원해외진출의 정책적인 지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환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공
글로벌 헬스케어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향후 국부 및 고용창출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 (2010년) 보건복지부 7대 중점과제로 "해외환자유치활성화" 및 "병원플랜트 수출지원" 사업 선정 • (2011년)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로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선정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개 국정과제 중 15번째 과제로 선정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10만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집중 양성 등 •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 국민 건강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p><small>* 정부 협약 의료연수 확대 및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 지원: 중국 거점센터(189월 개소) 베트남 거점센터 신설 준비 중(19)</small></p>

2010년 이후의 시기는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지원을 가시화, 병원진출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초기 Risk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시기



3세대 한국의료 해외진출



3세대 : 정부주도의 민관협력 인프라 구축의 시대

< 정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우수
의료자원의
새로운
활로 개척

글로벌
의료시장
경쟁우위
확보

새로운
일자리 및
국부 창출

이명박 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09)

글로벌 헬스케어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11)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13)

140개 국정과제 중
9번째 과제로 선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17)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보건복지부 중점과제(17)

글로벌 시장진출 및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 정부 협약의료연수 확대 및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 지원



IV 정부 지원 방향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2018)

비전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목표

-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
 - 의료기관 해외진출 : ('18) 16개 → ('20) 23개 → ('22) 33개
-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환자 수 : ('18) 36만 명 → ('20) 46만 명 → ('22) 60만 명

중점 전략(5개)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 ①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패키지 수출
- ②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역량 강화
- ③ 금융·세제·정보 지원
- ④ 한의약 세계화 지원

2.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⑤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 ⑥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 ⑦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편의성 강화
- ⑧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

3. 지역 특화 전략

- ⑨ 중국·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러시아·CS·몽골
중남미

4. 글로벌 역량강화

- ⑩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양성 지원
- ⑪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확대
- ⑫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5.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 ⑬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 ⑭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⑮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료



한국의료 해외진출 정부 지원 방향



의료해외진출의 전주기 Process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진출예정국 의료시장·경제·투자 및 환경 분석
- ✓진출국가·형태 및 규모 결정
- ✓컨소시엄 구성 및 현지 파트너 결정
- ✓제안서 작성(과목·인력·인프라·관리 계획수립)
- ✓사업계획·규모 검토 및 협상

- ✓국내/현지 업체(건설·기기 등) Pool 구축
- ✓사업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재무·법률 타당성 분석
- ✓최종 계약체결

- ✓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사업관리 조직구축 및 인력파견
- ✓공급계약(건설·기기·금융 등) 체결
- ✓현지인력 교육연수
- ✓현지 마케팅 강화

1단계 : 프로젝트 발굴

2단계 : 본격화

3단계 : 안정화





진출기반팀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해외진출법』 (2016.6.23) 제 4조에 의거,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 하는 제도
 * 미신고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전략국가별 해외 의료수요 등 맞춤형 정보 제공 (www.kohes.co.kr)

보건의료 해외진출분야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 KOTRA, 해외경제연구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정보연계를 통해 '17년 2만 건 이상 제공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단계별 의료해외진출 사업의 성공사례 창출 및 진출경험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 의료해외진출 전주기의 각 단계별 사업추진 소요비용 지원 (본 계약 체결을 위한 F/S·홍보마케팅·인력교육 등, 최대 300백만 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규채용 인턴인력에 대한 현지 실무교육비 지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

GHKOL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의료해외진출 지역별, 분야별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을 통한 온라인 상시 컨설팅 제공 지원
 *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위촉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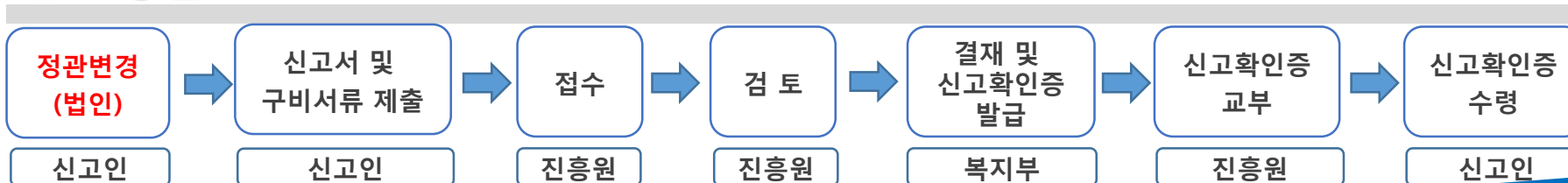


진출기반팀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 신고 의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 진출한 의료기관은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미신고시 제재 : 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 불응 시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내용
신고범위 제2조(정의)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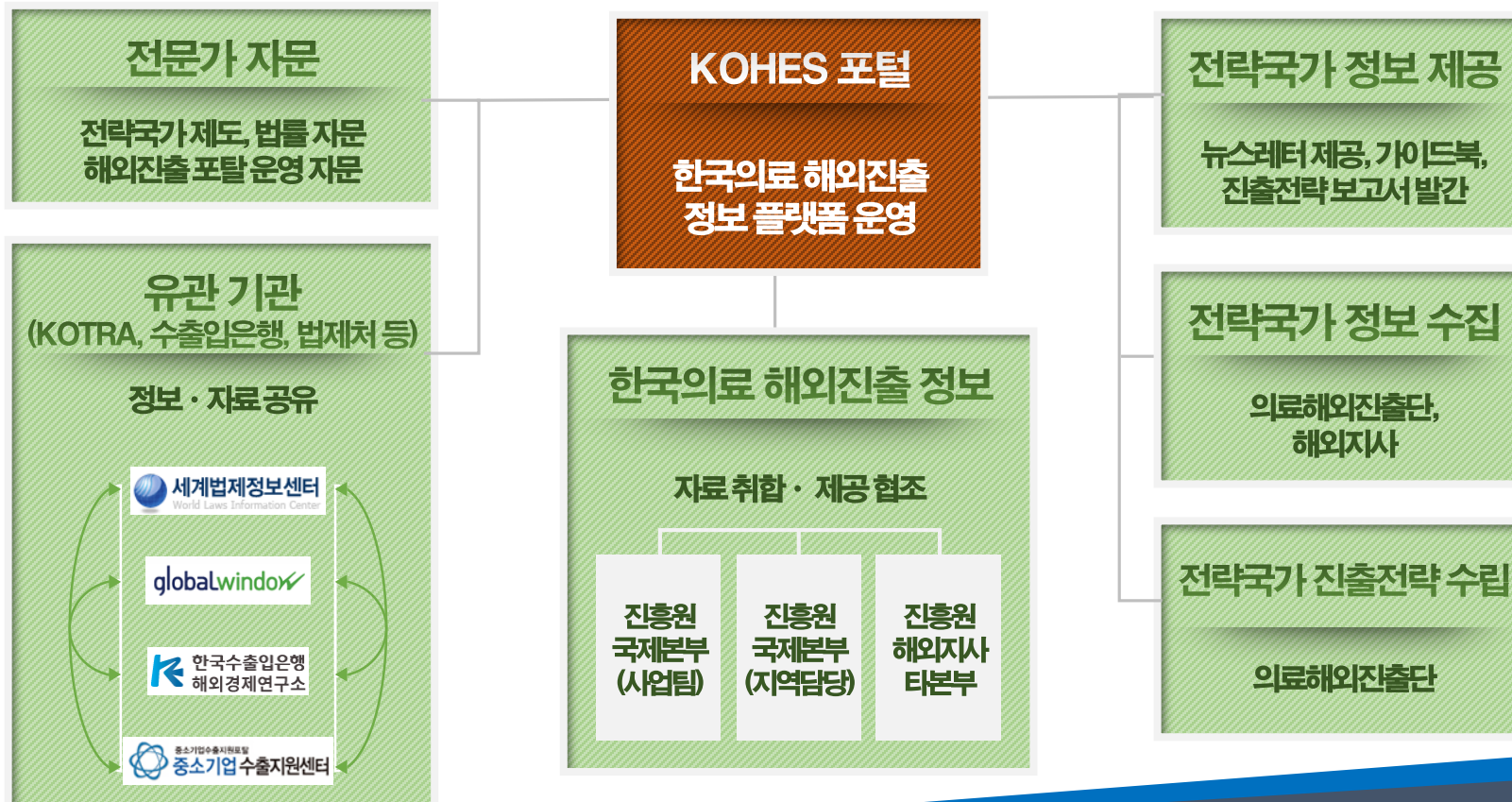
신고 방법





진출기반팀 :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 KOHES(www.kohes.or.kr)

-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 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보연계를 통하여 연간 2만 건 이상 제공





진출기반팀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대상 관련 사업지원을 통하여 한국의료 수출 모델 수립을 지원,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고 후발주자들에게 경험적 지식 공유 기반 제공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하는 의료기관 및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설립한 법인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대상범위

-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③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④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한 연관분야 진출(진단검사, 의료 IT 수출 등)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최근 2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
- * 미진한 사업결과(최종 결과보고)로 인해 지원금액을 전액 또는 부분 환수조치 받은 기관 및 해당 지원사업의 중도포기로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기관
- 불성실 납세 기관(총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



진출기반팀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9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진출 단계별 프로젝트 선정 지원 및 지원분야 확대

- ① 진출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 ②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부문 신설(최대 3억 원 지원)
- ③ 지원 범위 확대 및 운영 지침 보완

구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진출 발굴단계	발굴(초기)단계 프로젝트 지원 (시장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제안서 작성 등)	경비지원 (기관당 최대 40백만원)
진출 본격화단계	본격화단계 프로젝트 지원 (파트너 협상, 사업타당성 조사, 세부사업 실행을 위한 컨설팅 등)	경비지원 (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진출 정착단계	정착단계 프로젝트 지원 (리모델링 컨설팅, 현지설립 단계 법률자문, 현지 의료인력 연수, 홍보 마케팅)	경비지원 (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중대형 프로젝트	본격화 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30명상 이상(현지 진출기준) 중대형 프로젝트 또는 국내 병의원급 컨소시엄 구성 협력 진출 모델 (현지설립 단계 법률자문, 현지 의료인력 연수, 홍보 마케팅, 현지 사무소 단기 임차 지원 등)	경비지원 (기관당 최대 300백만원)



진출기반팀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관련 분야 연관 산업체 및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국고보조금은 **제안된 사업계획 및 채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지원내용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에 대한 **국내·외 실무 교육훈련비, 해외 체재비 지원**
- * 신규 인턴으로 관련 분야 경력자 채용 가능, 해외 근무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 (국내외 교육 훈련비 및 해외 체재비)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현지 실습을 위한 운영비 및 의료해외진출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출장비용(항공료, 체재비)
- (기타 활동비) 사무용품 구입비, 수수료, 도서인쇄비 등



진출기반팀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GHKOL)

- 분야별·국가별 민간전문가(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를 선정·활용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계별·맞춤형 상시 컨설팅 제공
- 법·금융·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역별 의료해외진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 진출 사례 공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성공사례 환류

배경

- 국내 의료기관의 내수중심 사업구조 및 의료서비스 중심의 인력구조로 인한 해외진출사업발굴 및 운영 역량 부족
- (애로사항) 초기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비용 부담, 진출 대상국 정보 및 전략 부재 등

현황

-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비용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역별·분야별 공신력 있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등 정부차원의 지원 요구 증가
- 해외진출 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시정 요구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방·중소 병원을 위한 지원방안 요청 증가

전략

- 진흥원은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이하 "GHKOL") 전문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단(이하 "컨설팅 지원단")을 구축하고 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연결을 중재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기대효과

- GHKOL 전문위원 컨설팅을 통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초기단계 컨설팅 제공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최소화
- 지방·중소 병원 해외진출 육성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로드맵 개발에 활용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에 기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사업소개



진출사업팀 : 중국 보건의료협력지원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지방 정부



보건의료분야의 상호협력·지원 및 장기적인 우호관계 수립

- ✓ 고위급 실무협의체 운영
- ✓ 보건의료포럼 및 세미나 공동개최
- ✓ 양자간 최신 보건의료정보 공유

- ✓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 파트너링 미팅을 통한 매칭 지원
- ✓ 계약체결 지원



한국 의료기관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



의료특구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모델 수립 등의 양국간 협력을 통한 한국 제약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의 중국 현지 진출 확대

전략지역대상 G2G 협력채널 확대

- 중국 지방 성시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정부간 협의 채널 구축 (현 총 11 건)

* [성급] 저장성, 허난성, 쓰촨성, 산둥성, [시급] 옌타이시, [특구] 칭다오 국제경제협력구,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광저우 난사신구 등 (복지부 포함)

민간 파트너십 구축 지원

- 보건의료협력사절단 모집·파견, 공신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 연결 (재외공관 활용)

* 검증된 현지 파트너 발굴 ▶ 보건의료협력사절단 구성·파견 ▶ 한국 의료기관 현지 홍보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 개최

중국 보건의료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 중국 지역별, 진료과목별 보건의료정책 및 시장 정보 제공
- 중국 의료해외수출 민관협의체 분과회의를 통한 진출 전략 공유 (분기별 1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사업소개



진출사업팀 : 러시아 · CIS, 아시아 등 보건의료협력지원 사업

1. 정부간(G2G)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 국가별 정부간 실무회의 및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의료해외 진출 환경 조성 및 인허가 등 의료해외진출 정보 공유

2. 국가별 보건의료 관련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 '재외공관활용 정부간 사업' 연계 한국 의료해외진출 포럼, 전시회 개최 및 비즈니스 상담 추진

3. 국가별 진출정보 제공 및 국내 보건산업체간 네트워크 강화

- 신(新)북방남방 의료해외 수출 민관협의체 개최 예정('19년 반기별 시행)
 - 진출희망기업 및 유관 협회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 지원 계획 수립 및 성과환류
- 지역 전문가 초청 강연, 국가별 보건의료시장 현황 및 정책관련 정보제공 등



(2018년 사업 추진경과)

- 국가별 실무협의체 (목표 20건 대비 34건 초과달성, 170%), 인콰이어리 검증 및 회신(목표 30건 대비 30건 달성, 100%)

* 인콰이어리 검증 및 회신 건수 지표정의: 고객(정부 및 민간)의 수시 요청(보건의료 관련 자료 제공, 의료기관 진출 문의 등) 응대

(2019년 개선사항)

- 정부의 신(新)남방·북방 정책에 따른 러시아, 중앙아,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사업 발굴·확대
- 주요 중점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 해외 정부간 공동 학술 교류회 및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등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국가별 정부 의료정책 및 시장정보 Brief 발간 등



진출사업팀 : 재외공관활용 정부간 사업 지원

(사업 추진배경)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복지부-외교부간 양해각서 체결(13.9) 계기, 의료수요 확대지역의 재외공관 활용 논의

< 사업목적 >

- 재외공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해외 진출기반 마련
- G2G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및 진출 장벽 제거
- 해외 신규 수요 발굴 및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국가별 특성 및 시장 수요에 근거한 보건산업 수출 지원

< 사업내용 >

- G2G 협의를 통한 정부간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 발굴
-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 및 1:1 비즈니스 미팅 개최
- 정부간 보건의료협력 포럼 개최
- 현지 보건의료시장 현황 조사

(사업구조) 외교부 공모를 통한 공관 선정 후 진흥원-재외공관, 진흥원-KOTRA 협약체결

(사업 추진경과) 2014년 3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15개 사업, 2016년 16개, 2017년 14개, 2018년 14개 사업 수행



국제입찰팀 : 국제입찰 진출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분야 국제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 해외 조달정보 제공
- ✓ 보건의료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 ✓ 해외공공조달 역량강화(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매칭 지원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동반 해외진출 성과 창출**

보건의료 해외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 국제조달벤더 등록 교육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조달시장 전자상거래 진입 및 마케팅 지원
- *절차: 기업공모 ▶ 선정 및 평가 ▶
협약체결 ▶ 기업컨설팅 지원

보건의료 해외입찰 지원 특성화

- 해외 발주기관, 정부, 기업간 연계사업화 지원
- *절차 : 기관 선정 및 역량분석 ▶ 프로젝트 수요
조사 및 사업 파이프라인 발굴 ▶
기관별 진출전략 수립 ▶ 수주도전

해외 조달정보 제공

- 해외조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 * 보건의료 정보제공을 통한 국제조달시장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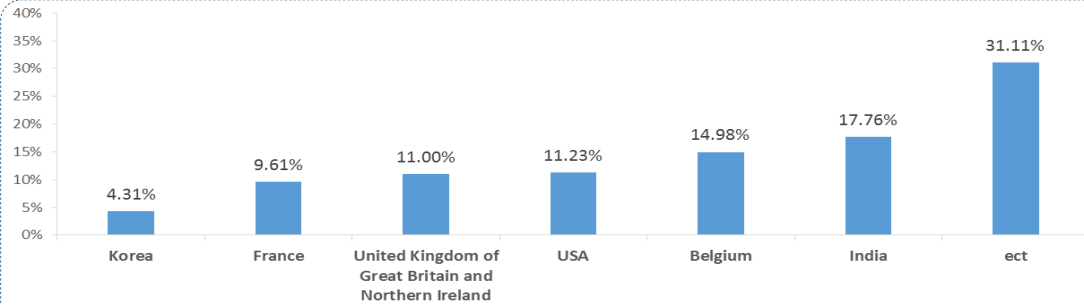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사업소개



국제입찰팀 : 해외 조달 정보 수집 · 분석

1. 해외조달시장 진입 현황



- UN조달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국내 조달규모는 **4.3%**에 불과
-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의 국내 조달규모는 **3.8%**에 불과

2. 해외조달정보 제공 개요

- 정보수집 대상: 국제기구(WB, ADB, EBRD 등) 및 해외시장
- 정보수집 분야: 컨설팅, 전문가구인, 의료기기 및 장비, 의료관련 건축 및 설계, 제약, 의료시스템
- 정보수집 목적: 해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수집 및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시장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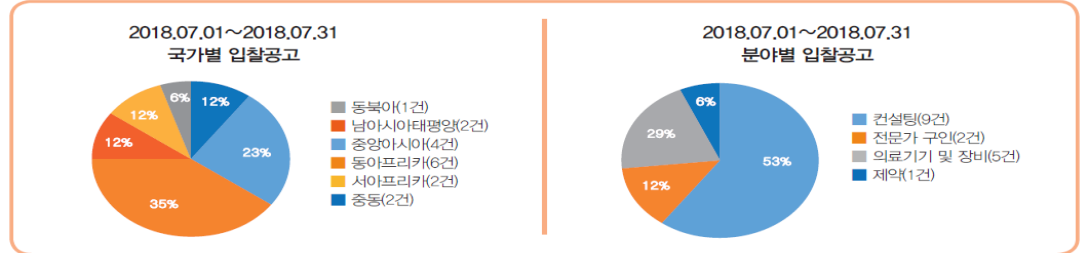
3. '18년도 해외조달정보 제공

- 분기별(2분기 ~ 4분기) 입찰동향정보 제공
- 세부 입찰정보 제공(발주처, 국가, 물품 및 서비스 종류 등)

1. 입찰 현황

· 입찰 공고 현황 및 리스트 (' 18. 07)

2018년 7월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1건, 남아시아 태평양 2건, 중앙아시아 4건, 동아프리카 6건, 서아프리카 2건, 중동 2건의 입찰이 공고되었으며, 컨설팅 9건, 전문가 구인 2건, 의료기기 및 장비 5건, 제약 1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프로젝트 세부사항

	발주처	구분	프로젝트명	국가
1	AfDB	제약	설사병 키트 구입 Say No to Famine Short Term Regional Emergency - Procurement of Interagency Diarrhoeal Disease Kits for Somalia	소말리아
	공고일	마감일	제공물품/서비스	
	2018-07-04	2018-08-23	설사병 키트 25개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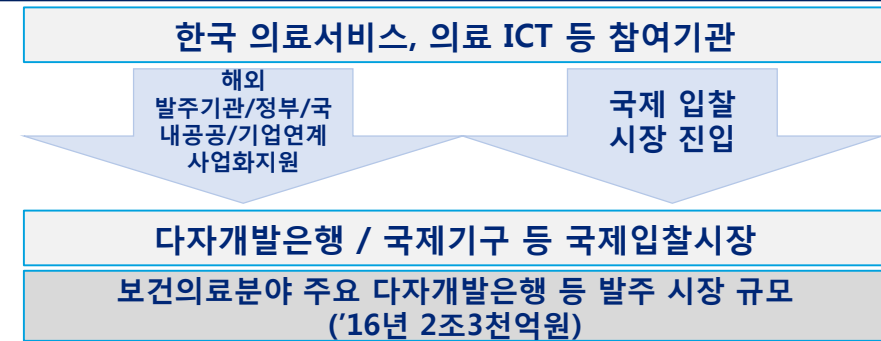


국제입찰팀 : 해외 입찰지원 특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보건의료산업체**(의료 ICT, 의료서비스 등)
- 진출 시장 :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국제입찰시장**
- 지원 내용 : 국제입찰시장 발주 수요조사·분석을 기초로 진흥원-다자개발은행 공동 워크숍, 해외 입찰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한 간접경험 축적 후 **국제입찰 참여 도전**

2. 사업수행체계



3. 참여기관 모집 절차



4. '18년도 사업수행 결과

- **진흥원-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워크숍 개최(11월)**: 6개국 프로젝트 담당자 및 보건부 인사, ADB 담당자 등 총 102명 참가
- 기업별 주요매칭국가 및 프로젝트
 - * **베트남** - A의료기관: 의료인력 개발 프로그램(**의료 컨설팅**, ADB)
 - * **스리랑카** - B 기업: 보건시스템 강화 프로젝트(**의료 ICT**, ADB)
 - * **부탄** - C기업: 병원정보시스템(HIS) 프로젝트(**의료 ICT**, A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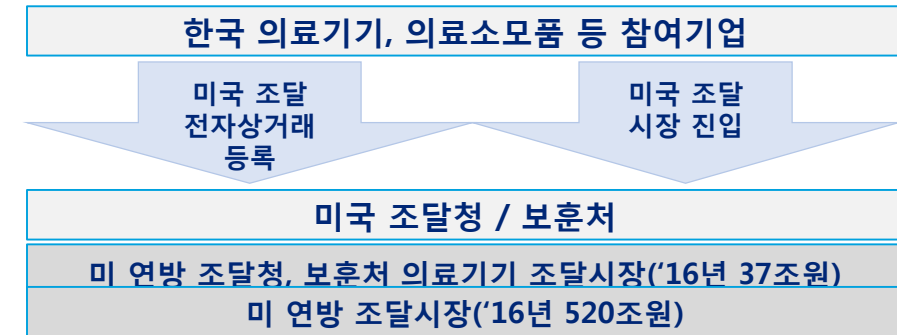


국제입찰팀 : 해외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보건의료산업체**(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
- 진출 시장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조달청, 보훈처)
- 지원 내용 : 기업별 제품 수요조사·분석, 미국조달시장 벤더 등록 관련 교육 제공, 청년인턴 매칭, 기업별 필요 서류 및 인증 획득,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작성 등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전자상거래 벤더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최종 제출 지원**

2. 사업수행체계



3. 참여기업 모집 절차



4. '18년도 사업수행 결과

- '18년 참여 기업(4개사) 모두 미국 전자상거래 등록 서류 제출 완료

'18년도 참여기업	품목
A	통증 완화용 일반의약품
B	레이저 채혈기기
C	치아 근관 충전재
D	X-ray 진단 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사업소개



국제입찰팀 : '18년도 국제입찰 지원 사업

해외 입찰지원 특성화 사업



해외공공조달 컨설팅 사업





V 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



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



주요 17개국 유형별 분류 & 세분화

국내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시 국가별 필요 교육 및 면허제도 전략 구축을 위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해외진출 유형	의료현대화 추진 유형	의료시스템 호환 유형
특징	보건의료선진국으로 정부 전담기관과 민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병원 설립 및 운영 프로젝트 수행	자국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확대 정책으로 선진 의료 인프라 유입 활성화 추진	아세안 조약에 따라 ASEAN 회원 국가 간 의료면허 호환 및 학제인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자유이동을 목표로 함
주요국가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국가	• ASEAN 회원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태국 & CIS
보건의료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면허인증 기관&협회를 갖추 -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y(ABMS), Certification of Completion of Training(C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 의료인력 고용 • 중동 : Tier 1 국가의 최고 수준 의료 선호가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영국 및 미국 의과대학 커리큘럼 도입 및 선진국형 면허 관리기구와 교육제도 보유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 Know-how 등 지식 재산 기반 의료기술 지원 및 운영에 대한 Total 서비스 • 글로벌 선도병원 (Cleveland Clinic, Johns Hopk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선진의료인프라 유치를 위한 국제 의료특구 조성 계획 • 중동 : 보건의료선진국가 면허를 보유한 외국 의료인력 선호&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금력과 자체 보유한 Healthcare Value Chain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에 직접 진출(병원,인력) • Healthcare Group(Parkway, Raffles)

국제적으로 교육제도 및 면허제도를 인정받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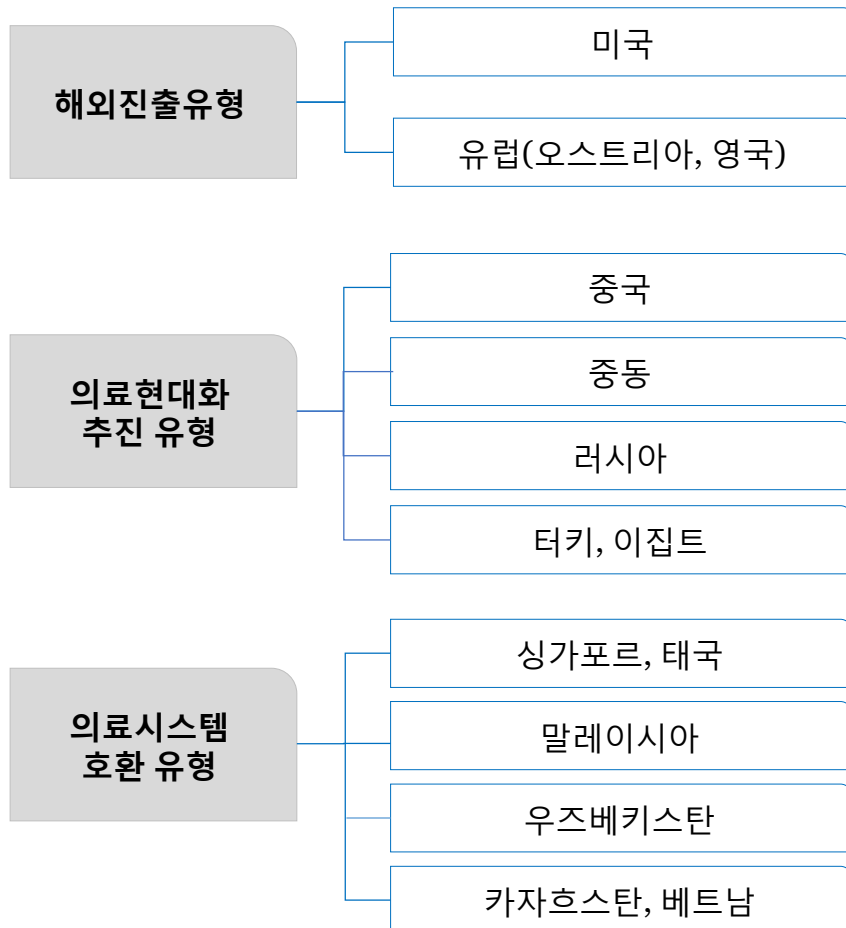
자국의 의료선진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의 교육과정 및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



주요 17개국 유형별 분류 & 세분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별로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진출하기 위한 세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음

주요 17개국 유형별 분류



세분화 Framework

- 보건의료선진국으로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평가인증기관 및 면허발급 기관 유무 조사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 인문학적 교육과정 유무 조사
- 해당 국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역량, 자격 조건 등이 무엇인지 분석
- 채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 의료인력이 교육받은 국제화 역량 강화 과정 분석
-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석(면허인정요건)
- 해당 국가의 자국 보건의료인력 이해 외진출하기 위한 국제화역량 프로그램 및 대학 교육시스템 등 조사

분류된 국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분석



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



주요 17개국의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선진국 교육제도 도입과 교육 커리큘럼의 보완

의대 대학 커리큘럼 개선 현황

UAE

전공의 프로그램 지원

- UAE 전공의 프로그램은 경쟁이 심해 UAE 시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됨
- 외국인은 전공의 진입시험, 인턴시험을 통해 들어갈 수 있음

말레이시아

교육 커리큘럼 개선을 통한 발전

-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으로 교과목 위주 교육과정을 탈피
- 임상현장 문제 중심으로 교육제도 전환
- 문제바탕학습과 장기 별 통합교육 병합 및 발전

의학 교육
학제

	Admission	Medical school	Transition	Residency	Subspecialty	License exam
U.K.	High school	5y	Foundation Training 2y	Common trunk 3-4y	3-4y	None
Korea	High school College	6y 4y	Intern 1y Intern 1y	3-4y	1-2y	2 Part
Australia	High school College	5y 4y	Intern 1y Intern 1y	Basic training 3y	Advanced training 3-4y	None
U.S.A. Canada	College	4y	None	3-5y	1-4y	3 part 2 part

주요 17개국 대부분 보건의료선진국의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
국내 전문의 자격과 보건의료선진국 전문의 자격은 동등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



국가별 외국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료 행위 가능조건 제약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호환시스템 및 국제적 면허 인증 필요

외국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취득 현황

말레이시아

- 외국 보건의료인력 진료 자격
- 의사는 합법적 의료활동을 위해 Medical Qualifying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함
 - 외국 보건의료인력은 의학협회 내규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함
-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의학협회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중국

- 외국 보건의료인력 단기의료면허
- 외국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 중
 - 성급위생행정부서의 심사 통과 후 외국 의사 단기의료 허가증 수여

싱가포르

- 외국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건
- Singapore Medical Council(SMC)에서 인정한 전문가 자격 보유자는 조건부 등록 가능
 - SMC에서 인정하는 한국의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임

이집트

- 의료 전문가 신청가능 자격증
- 외국인 의사는 이집트에서 진료행위를 위해 의료조합의 특별 허가 필요함
 - 의사조합법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 의료인력은 의사조합과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각 나라별 외국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사 및 담당 기관이 있음

외국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단기면허제도를 시행함



VI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절차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 절차



중국 해외진출 면허정보

○ 보건의료인력 면허체계

•주원의사: 병원-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시
[5(본과)+3(주원의사 수련)]

•전과의사: 주원의사 합격 이후, 이론 및 임상실기 시험 합격 후
합격증서 발급
[5(본과)+3(주원의사 수련)+N(전과의사 수련)]

구분	수련기간	유사개념	비고
견습의사	1년	인턴	• 의사 자격증 취득 전 견습기간
주원의사	3년	레지던트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수련기간
전과의사 수련의	N년	레지던트	• 주원의사 과정 후 전문의 과정 수련기간
전과의사	-	전문의	-

○ 보건의료 교육체계



○ 외국인 보건의료인 면허신청

•위계위가 2014년 발표한 “중국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의사집업 등록 건 동의에 관한 회신”에 의해 의료기관에 집업등록이 가능해짐
- 간호사: 위생행정부서의 시험을 통과할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 1년)이 발급되고 연장 가능함

구분	외국인 의료행위 임시면허	
	베이징	기타 지역
도입취지	• 외국의 의료신기술 도입 및 외국기관의 기술교류	
유효기간	• 1회의 수술/진료	• 1회의 수술/진료 • 일정기간
복수발급	• 동일인 일정기간 내 복수 발급 못함	• 지역에 따라 다름
행위범위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 지정	

○ 외국인 면허인정 사례

- 허무지아(미국계 병원그룹)
 - 베이징 등에 2급병원을 포함한 15개 의료기관 운영
 - 의사의 60% 이상이 외국인(17개 국가)이며, 외국인 의사 자격증 보유가 원칙
- Parkway
 - 상하이로 중심으로 9개 클리닉 운영
 - 의사의 85%가 외국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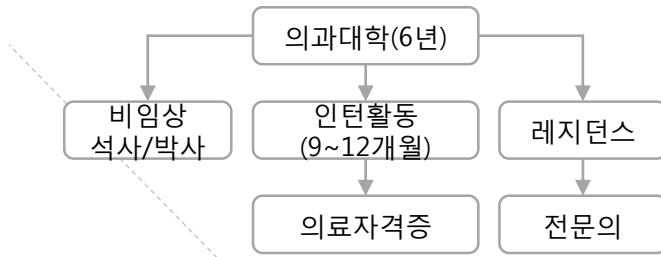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 절차



베트남 해외진출 면허정보

○ 보건의료인력 면허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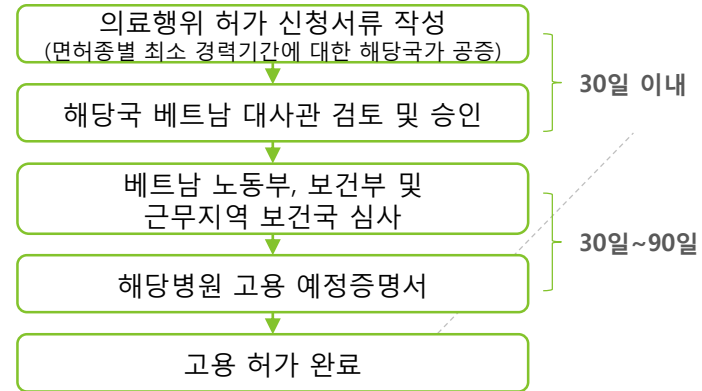
- LET법
 - 18개월의 병원기반 임상인턴기간을 필수화(제24조항)
 - 아직 제24조항에 대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인턴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고 있음
 - 법률 해석에 따라 병원시행령 수습 지속기간에 9~12개월로 차이가 있음



○ 외국인 보건의료인 면허신청

-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
 - 행위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연장 가능

- 직종별 최소 경력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3년
 - 간호사: 12개월
 - 조산사, 기사: 9개월



○ 보건의료 교육체계

- 교육체계
 - 표준화된 의료교육과정 및 국가수준의 의료역량검사시험이 없음
- 의과대학 졸업장은 2차 교육 후의 대학 교육으로 이루어짐
 - 일부대학은 지역사회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4년제 보조의사 프로그램을 제공

○ 외국인 면허인정 사례

- 현재 베트남 법령 상 해당국가에 따른 면허인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현지 근무의사 수는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남미국가 순으로 파악 됨
 - 전체 외국인 의료인력 중 약 30%는 면허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진료중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 절차



싱가포르 해외진출 면허정보

○ 외국인 보건의료인 면허신청

·아래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등록에 지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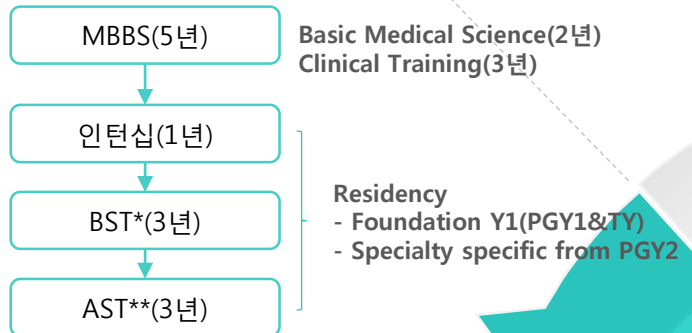
- ① Second Schedule of the Medical Registration Act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직위를 취득한 IMG*s
- ② Singapore Medical Council(SMC)에서 인정한 대학원생**
- ③ Specialists Accreditation Board(SAB)에서 인정한

* IMG(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면허

** SMC에서 인정하는 한국의 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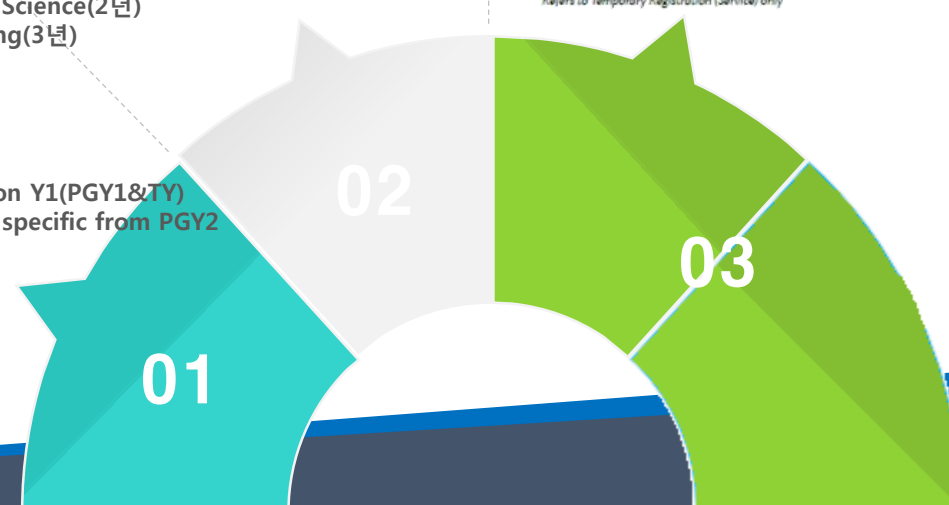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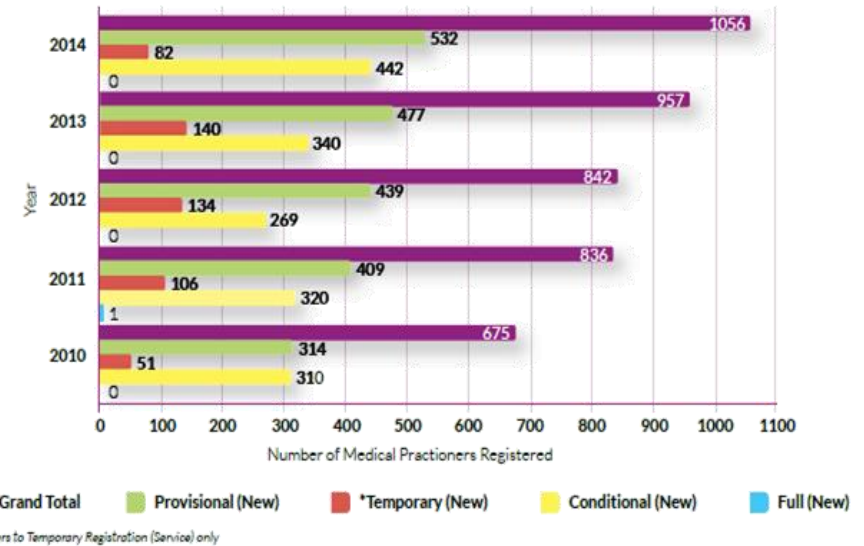
·조건부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들은 임시 등록에 지원 가능

○ 보건의료 교육 및 면허



* Basic Specialty Training
** Advanced Specialty Training

○ 외국인 면허인정 사례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 절차



싱가포르 해외진출 면허정보: 의사면허등록제도(의사 & 치과의사)

● 의사 면허 발급기관 : 싱가포르 의료위원회(Medical Council)

● 의사등록 종류

<p>잠정 등록 (Provisional Reg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의과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갓 졸업한 자가 싱가포르 내 공인 병원의 인턴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등록 지위를 말함 ▶ 고용주(싱가포르내 병원)가 신청함(고용주는 인턴/PGY 1 수련 제공 공인기관이어야 함) ▶ 의사 등록법에 고시된 의과대학 학위 보유자만이 신청 가능
<p>조건부 등록 (conditional Reg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수련을 마친 의사(인턴십 종료)가 정식 등록 의사의 감독아래 싱가포르 내의 의료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를 말함 ▶ 의사등록법 고시된 의과대학 학위자, 석사 또는 전문의 자격보유, 의료위원회가 인정한 의료기관 채용, 인턴십 완료, 진료 기록 입증서류, 언어 능력 입증 서류
<p>정식 등록 (Full Reg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또는 해외에서 수련한(인턴십 완료) 의사가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위 말함 ▶ 싱가포르 국립 대학 MBBS 학위, 인턴 종료, 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 Singapore 발급 MD 학위, USMLE 3단계 수준 ▶ 입증 서류, 소정의 기간중 성공적인 진료 종료 입증서류, 잠정/조건부 등록 기간중 진료서류,
<p>임시등록 (Temporary Reg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수업, 강의, 연구, 강연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공립병원에 근무 가능

* 위원회에 인정한 한국 의과대학(3개) : 서울대학교 의대, 연세대학교 의대(서울), 고려대학교 의대(서울) 인정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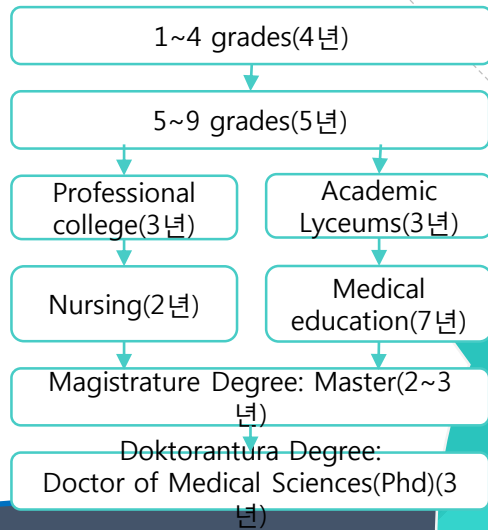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해외진출 면허정보

○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보수교육

• 후기중등과정 졸업 후 3년간 전문의과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의사 또는 간호사로의 선택이 가능함
 - 면허 종류에 따른 학사 또는 석사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

• 의사는 5년에 1번씩 의사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시 28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보건의료 교육체계



○ 외국인 보건의료인 면허신청

- 외국인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를 관장하는 법안 부재
- 학위·면허·자격증 등 발급기관: 국립시험센터
- 학위·면허·자격증 등 획득방법: ① 우즈베키스탄 대학교 교육이수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② 외국 연구와 학위 공증

• 외국인 의료인력은 각 국가에서 이수한 교육증명서 및 연구실적, 경력사항의 공증 자료를 제출하여 의료면허를 인증 받음

단계	주체	내용	이행기간
1 단계	면허 공동신청자	• 서류준비 및 제출	면허 공동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2 단계	면허 관리 및 통제	• 서류접수 및 목록사본발송 • 서류검토 후 발급 및 거부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 작성 • 재차 제출한 서류 검토	• 서류접수일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재차서류제출후 6일 이내
3 단계	면허 발급기관	• 면허발급 결정 • 결정에 대한 통보 • 면허등록부 기재 • 재차 제출한 서류 검토	• 3일 이내 • 2일 이내 • 결정 후 3일 이내 • 재제출 후 3일 이내
4 단계	면허 공동신청자	• 면허발급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계약서 서명	• 통보 전달 후 3개월 이내
	면허 공동신청자	• 재차 서류 제출	• 면허발급 거부 통보에 명시된 기간
5 단계	면허 관리 및 통제	• 면허서류 및 카드 작성 • 면허 발급	• 서명 및 수수료 납부일

○ 외국인 면허인정 사례

- 2015년 한-우즈베크 의료면허 협정체결
- 한국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 통상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시 현지 보증인 필요 및 1년 이상 소요



주요국가 의료인력 면허정보 및 취득 절차



러시아 해외진출 면허정보

○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능력개발 및 전문재교육은 러시아 보건부령 제66호 제5항에 설정된 자격조건에 따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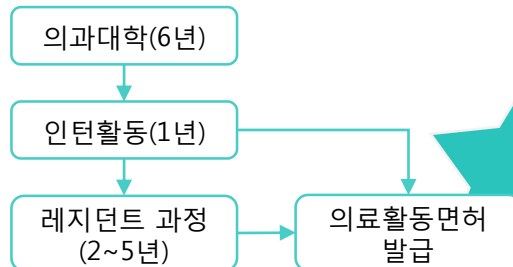
•5년마다 추가훈련(144시간 이상)을 받아야 인증효력이 유지

교육의 종류	기간
능력개발	5년에 최소 1번 이상
전문재교육	의료진의 전공과 변경 시
연수	고용자의 필요에 따라

○ 보건의료 교육 및 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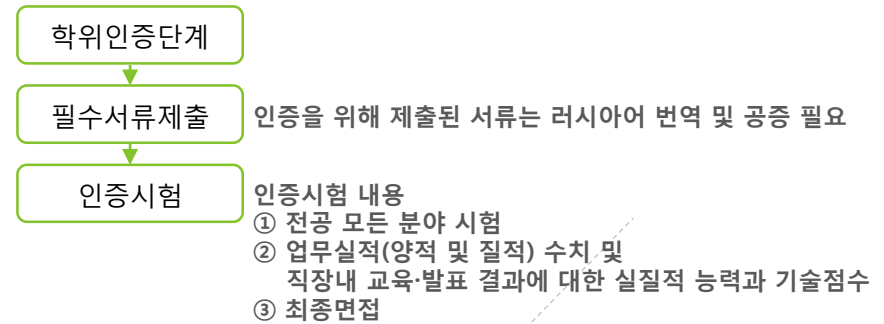
교육체계

- 별도의 의사면허시험 없이 6년제 의과대학 졸업학위가 자격면허이며, 의료활동을 위해서는 의료활동면허가 필요함



○ 외국인 보건의료인 면허신청

•러시아 연방 국민건강보호를 기초로 한 헌법 제 100조에 의거,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 교육연합에서 인정받은 후 의료활동이 가능



•시험 이전에 러시아 의학아카데미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유료로 이수 필요

○ 외국인 면허인정 사례

•소콜코보와 소치의 의료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외국 의료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러시아 내에서 의료 활동을 실행하는 사례는 없음





VII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화



국내 보건의료인력 국제화 : 정성적 분석

현재 국내 보건의료인 커리큘럼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면허관리기관의 국제적 공신력이 뒷받침되지 못함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커리큘럼

언어 제약

- 보건의료인력 대부분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함
- 중국어/러시아어로 응답한 인원은 지극히 제한적임

한정된 교육 커리큘럼

- 국내 41개 의과대학의 국제화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매우 미흡함
-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한 것 보다 주로 질병이나 진료와 관련된 의학 영어 과목이 많음

▶ 국내 의과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커리큘럼

학교	교과목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을지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의학영어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실용의학영어
원광대학교	영어회화, 의학
대구카톨릭대학교	기초의학영어
건양대학교	기초일본어회화

진료 중심 보건의료 인력양성

통합 교육기관 부재

- 대학&병원&연구가 연계된 보건의료인력 Training System 부재
- 직무별 맞춤형 교육의 부재로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생김

면허관리 기관 부재

- 발급/ 감독/ 관리가 각기 분산되어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과 같은 공신력 있는 면허 발급/유지관리 및 평가기관의 부재

예) 2013년부터 국내 치과대학 미국치과의사면허시험자격(CODA) 인증 제도 도입 추진

- CODA 인증 제도는 국내 치과대학이 국제적으로 인증, 졸업생들이 미국치과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얻는 것
- 졸업생 중심의 국제화 역량강화 추진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화



국내 보건의료인력 국제화 : 정성적 분석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학제 보완 및 면허유지·관리 위한 보수교육 강화로 “아시아 의료인 전문 재교육기관”으로의 승격이 필요함

대학 내 교육 커리큘럼 보완

- ✓ 국내 41개 의과대학 및 간호학과 교육 제도의 국제화 역량강화 교육 과정이 매우 미흡함

▶ 국내 의과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커리큘럼

학교	교과목
고려대학교	의대생을 위한 글로벌리더십
한양대학교	글로벌리더십
한림대학교	외국문화의 이해
강원대학교	외국의대 선택실습

- ✓ 해외진출 유형 국가 벤치마킹으로 인문학적 교육제도가 필요함

▶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교육 과정 필요

- 국내 의료진 ↔ 현지 의료진
- 의료진 ↔ 환자
- 의료진 ↔ 보호자

▶ 문화적 장애, 가치, 태도 관련 통합교육 과정 필요

보수교육과정 강화

- ✓ 국내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현황

- ▶ **직종별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온/오프라인 교육) / 매 3년마다 면허 신고 시 이수여부 표기
- ▶ **보수교육 프로그램** - 학부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 (진료 중심/ 진료 지원 중심 프로그램 구성)

- ✓ 보건의료 분야별 협회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 하에 프로그램 증설 필요

- ✓ 보건의료인력 면허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아닌 해외진출 관련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

▶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외국어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증설

▶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실용화

- 직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국한됨

▶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글로벌화

-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유치 통한 업무의 글로벌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화



국내 보건의료인력 국제화: 정성적 분석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학제 보완 및 면허유지·관리 위한 보수교육 강화로 “아시아 의료인 전문 재교육기관”으로의 승격이 필요함

글로벌 공신력 갖춘 통합인증기관 필요

- ✓ 국내 보건의료인력 면허 관련기관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인 면허발급
 - ▶ 분야별 협회
 - 면허취소/ 정지
- ✓ 2003년, 국시원 국제의사면허협의회(IAMRA)에 가입
 - 의학교육 및 면허와 관련된 수준 높은 국제적 기준제시
 - 각 국의 면허기관 지원, 정보교환 기회 제공

“국내 전문의 자격은 미국, 영국 등과 동등성을 갖추었지만 공신력 있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공의 교육 평가기관의 부재가 국제적 전문의 자격인증에 걸림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안00-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

- ✓ 공적개발원조(ODA)와 국내 의료기관&의료인력 해외진출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필요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개도국 무상원조 총괄
 - 국내 최대 규모 개발협력 플랫폼
 - 신시장 네트워크와 브랜드이미지 구축 기회제공
 - ▶ 해외진출 의료기관 브랜드 파워 구축
 - 민간 의료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KOICA와 협력으로 성공 사례
- ✓ 국내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
- ✓ 외국 보건의료인력 연수 교육의 징검다리 역할
- ✓ ODA와 의료기관 진출사업의 교차점 발굴로 해외진출사업의 효과성 제고



VIII 의료인력 해외진출 국외 사례



의료인력 해외진출 국내외 사례



의료인력 해외진출 사례: 일본 사례

● 일본-싱가포르 의사면허 양자협정 (2002년 1월)



일본인 의사 → 싱가포르로 진출 시

- ▶ 싱가포르 Medical Council에서 최종 결정
- ▶ 일본 의사 면허 소지자(일본국적)
- ▶ 의사 면허 인정 수 15명으로 한정
- ▶ 자유로운(제한 없는) 의료 활동 허용



싱가포르 의사 → 일본으로 진출 시

- ▶ 일본 측에서 최종 결정
- ▶ 일본 의료면허 시험을 영어로 합격한 자만 허용(싱가포르 국적)
- ▶ 의사 면허 인정 수 : 의사 7명, 치과의사 3명으로 한정
- ▶ 외국인환자 대상·특정지역(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 이린현)에서만 의료 활동 허용

● 일본-프랑스 의사면허 양자협정 (1996년 3월)



일본인 의사 → 프랑스로 진출 시

- ▶ 일본 국적을 가진 의사 4명으로 한정



프랑스 의사 → 일본으로 진출 시

- ▶ 의료기관 한정,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의사 1명으로 한정



의료인력 해외진출 국내외 사례



의료인력 해외진출 사례: 일본 사례

● 일본-영국 의사면허 양자협정 (1964년 3월)



일본인 의사 → 영국으로 진출 시

- ▶ 영국 내에 있는 일본 의사협회·단체 등의 요청 근거하여 의료행위 인정 가능성 검토
- ▶ 의사 면허 인정 수 9명으로 한정
- ▶ 영국에 있는 일본계 병원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 * 외무성 등이 주로 공공 병원 관계자로부터 선발



영국 의사 → 일본으로 진출 시

- ▶ 인원수 제한 있음
- ▶ 영국인 의사는 3개 병원에서만 진료 허용 :
- 도쿄 메디컬 & 서지병원, 도쿄 브리티시 병원, 코베 해성 병원

● 일본-미국 의사면허 양자협정 (1971년 36월)



일본인 의사 → 미국으로 진출 시

- ▶ 해당사항 없음



미국 의사 → 일본으로 진출 시

- ▶ 의료기관 한정(1곳), 인원 제한 없음

*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 특구의 규제 개혁의 의료부문 중 의사 자격제도에 관한 양자 협정 대상국가 및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일반진료까지 확대 추진 중



IX 향후 극복과제와 전망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과제



1. 일부지역에 편중, 소규모의 영세한 진출이 다수이나 점차 진출지역 및 형태 다변화

- 한류의 영향을 받는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편중된 성형·피부과 중심 소규모 의원급 진출이 대다수
- 종합병원형태 대규모 진출 서서히 증가

2. 자생적 민간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 부족

-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병원해외진출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新 시장 진입에는 주저

3. 가시적 성공사례 소수이며, 시장은 아직 초기형성단계

- 진출 의료기관 중 성공사례가 아직 소수
- 시장형성 시작단계로 수익창출의 모델 및 규모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

4. 수익창출 Biz-Model 및 법적·제도적 지원 제약에 대한 본격적 시장형성 지연

- Biz-Model 부재로 인해 사업의 Key-Player인 병원과 금융권은 본격적인 시장진입 및 대규모 투자에 주저
- 의료기관의 Global Biz-Mind 및 경험, 역량에 한계.(전문인력 부족)
- 법·제도적 등 제약적 환경에 의해 의료기관이 해외시장진출의 Key-Player로 나서는데 한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입기 도래

향후 전망

-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현 "3세대(시장조성의 시기)" 이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입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역량 있는 민간주체들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공공 대형프로젝트를 수주·운영하는 경험을 축적
- 향후 2020년대에는 민간의 주도 하에 본격적으로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운영
- 한국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시장 정착기로 접어들것으로 기대
-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VAMED나 Parkway Holdings를 넘어서는 민간기업 등장
- UPMCL나 Cleveland Clinic을 뛰어넘는 민간병원의 등장 가시화 기대

(전제) 민관협력

-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상호보완과 협력, 대승상승적인 차원(시장 또는 산업생태계를 키우는)에서 국내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경험공유와 양보와 협력, 진출국의 보건의료성장에 협조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성장으로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차세대 한국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
글로벌 헬스케어 선진국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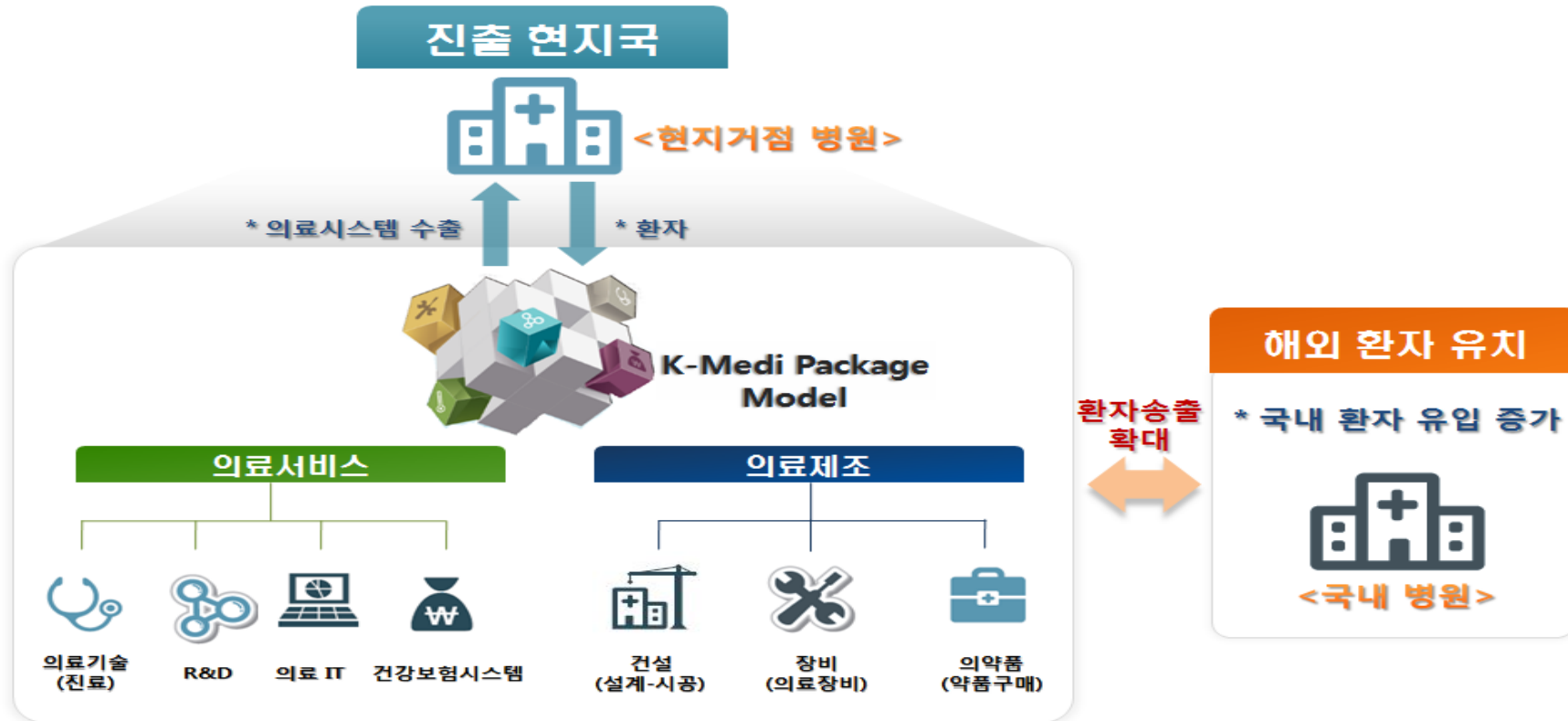


세계화 전략을 위한 의료해외진출 모델



'패키지(Package)형 진출 모델' 사례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의료서비스** (의료기술, IT헬스, 건강보험, R&D)와 **제조산업** (건설, 제약, 의료기기 등)을 **"융합"** 한 한국형 의료패키지 모델





패키지(Package)형 진출 모델의 가능성

잠재력	기회
<p>높은 의료기술, 저렴한 가격, 신속한 진단·치료시간, 첨단 의료장비·IT 시스템 등 경제성 대비 고효율 의료제공 체계의 국제 경쟁력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의료장비 등 여유 의료자원 활용 및 상대적 고수가 의료로 신규 수익원 창출 가능 <p>* 인구 천명당 병상수 7.8 > OECD 평균 5.4,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율 89%</p> <p>** 1인당 진료비: 국내환자 96만원 < 해외환자 149만원(입원 662만원)</p> <p>*** 서울대병원 UAE 왕립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계약체결(5년간 1조원 규모)</p>	<p>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속에서 신흥 개발도상국 성장추세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중동·중국·러시아·CIS·ASEAN 등 신흥국 중심으로 대규모 의료 현대화 투자 (약 40조원), 해외 의료자본·인력 유치 노력 가속화



Package형 모델의 수출 기대효과



패키지모델 추정사업비(500병상 기준)

● 병원건립비용 (추정치)

세부사업비 구분	USD (천달러)	원화(백만원)
병원건축비	101,741	111,915
(1) 공사비	93,083	102,391
(2) 설계비	4,153	4,568
(3) 건축 설계 감리비	4,505	4,956
의료장비	27,487	30,236
(1) 의료기자재 구매	26,487	29,136
(2) 의료전산시스템 구축	1,000	1,100
병원건립 컨설팅비	8,726	9,599
(1) 컨설팅 서비스(병원건립)	7,693	8,462
(2) 교육훈련	1,033	1,136
제세공과금	690	759
예비비	13,795	15,175
총 병원건립 사업비	152,439	167,683

● 5년간 위탁운영비용 (추정치)

구분	USD (천달러)	원화(백만원)
약제비	연간 45,155	연간 50,000
최소 병원 운영비	연간 90,310	연간 100,000
총 운영비용 (5년)	677,323	750,000

총 5년간 위탁운영 수수료(한국병원 수익)

* 총 운영비용의 20~25%가 위탁운영 수수료이며, 최소 20% 적용

135,465

150,000



Package형 모델의 파급효과



진출 모델 별 파급효과

사례	예상 수익
합작투자 사례 (A병원 중국 불임센터)	매년 100억원 이상 수익 예상
위탁경영사례 (B병원 UAE 전문병원)	250병상, 5년간 파견인건비 포함 2,000억원 예상
위탁경영사례 (C병원 UAE 재활전문병원)	30병상 연 평균 50억원 수익예상
라이센싱 사례 (D병원 CIS 심장전문병원)	브랜드사용료 연 50억원 예상
프랜차이징 사례 (E 피부과)	1개소당 10억 투자 시, 월 매출 5억원, 연 매출 60억원 (순이익 약 20%)
패키지모델 사례 (500병상 종합병원 건립+5년 위탁운영)	병원건립 총 사업비 약 1,700억원 (설계-건설-의료기기 및 IT-운영컨설팅 포함) 5년간 위탁운영비 총 7,500억원 총 매출기준 약 9,200억 원

패키지 모델 (500병상 기준)의 매출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에어버스A380 1대
(약 3,000억원)



3대



초대형 유조선 1대
(약 1,000억원)



9대



우수사례 : 진출단계별 연속적 지원으로 주요전략지역 진출 성공사례 창출

진출단계별 지속적 맞춤형 지원으로 규모별 진출 성공사례의 연속적 창출

중국 칭따오 세브란스병원 (신촌)

1,000병상 종합병원, 7월 착공식
발굴→사업타당성조사(F/S)→계약→착공



카작 알마티 암 클리닉 (강남 세브란스)

여성암전문병원, 11월 개원식
발굴→사업타당성조사(F/S)→계약→운영



우즈벡 부하라 정형병원 (부평 힘찬병원)

100병상 정형외과전문병원, 3월 협약식 체결
발굴→사업타당성조사(F/S)→계약→착공



감사합니다.



배좌섭 의료해외진출단장
Tel: 043-713-8461
Email: horizon0@khidi.or.kr